

## 일제 강제동원의 배상 판결과 대응방안\*

김재형\*\* · 김종국\*\*\*

◁ 목차 ▷

1. 서론
2.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현황
3.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4. 우리의 대응 방안
5. 결론

---

\*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019학년도)

\*\* 주저자,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Abstract>

## Judgment on the Reparation of the Japanese Forced Mobi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s

Kim, Jaehyeong and Kim, Jongkuk

Japan forced approximately six million Koreans mobilized in the six years from 1939 to 1945, and over 1,000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took the head for this forced mobilization. At last, on October 30 and November 29 of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handed down judgments in favor of the plaintiffs, some Korea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Japan. The defendants were the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the New Nippon Steel of war criminal enterprises. Since then, further lawsuits related to the forced mobilization have been filed. Japan's Prime Minister Abe claims that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was resolved by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and that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wa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victims are trying to seize and enforce the related property, but they have been suspended due to strong Japanese opposition.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showing signs of prolongation, and the dama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growing like a snowball. And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it. So how do we respon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ongly cop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in a way that denies Korean

jurisdiction and challenges it. Second, we need to come up with an agree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Currently,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sought to reach an agreement with Japan. A countermeasure among them is the 1+1+a proposal,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convincing. This proposal is that Japanese enterprises, Korean enterprises, and the Korean government ar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However, even if the proposal is agre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must be accompanied by a tru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ar criminal enterprises.

## Key Words

forced mobilization,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criminal enterprise, tru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countermeasure

## I.

2018년 10월 말과 11월 말에 대법원에서 잇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함에 따라<sup>1)</sup>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sup>2)</sup>으로 해결되었다며 일본 기업

---

1)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2)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

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이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하급심에서도 승소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이에 따라 관련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관계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양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강제동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두 개의 대법원판결 중에서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한일간의 갈등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II.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현황고찰

### 1. 강제동원의 배경과 규모

일제의 강제동원은 중일전쟁(1937년) 중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대병력이 소모하는 군수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공업과 운수업에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강제동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39년 국가총동원법<sup>3)</sup>이 제정 공포되고 이후 각종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법령들이 마련되었다. 실제 강제동원은 ‘조선인 노무자 内地(일본 본토) 이주에 관한 건’이 제정된

---

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함과 아울러 제2조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

- 3) 국가총동원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 모든 지배지역의 사람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전시 통제 기본법이다. 母法인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국민징용령 등 각종 통제 법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1939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9년부터 일제가 폐망한 1945년까지 강제동원의 규모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다. 첫째, 석탄 광산에 49만 3,005명, 금속 광산에 11만 3,258명, 토건에 17만 6,889명, 항만 하역에 3만 9,153명, 공장 기타 동원에 30만 4,857명 등 총 112만 9,812명이 동원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호경, 2010: 26). 둘째, 일본에 징용된 사람이 150만인데 석탄광산에 약 60만, 군수공장에 약 40만, 토건에 약 30만, 금속광산에 약 15만, 항만 운수에 약 5만이 동원되었고, 조선 내에서 동원된 사람은 450만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경식, 2008: 김호경, 2010: 27에서 재인용). 셋째, 일본의 민간단체인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에서 1974년에 조선인 강제동원 숫자는 150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넷째, 일본과 남양군도 등에 약 153만 명, 조선 내 노동력 동원 약 480만 명 등 총 합계 633만 명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섯째, 1980년 사망한 중의원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清十郎)는 징용공 사망자 57만 6,000명, 조선인 위안부 14만 3,000명 등 총 90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섯째, 동원 규모가 연인원 790만 명, 사망자는 55만 명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곱째, 199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해외희생자 유해현황 조사사업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 권희영 교수는 사망자 26만 7,600명,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자인 정인섭 교수는 36만 3,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호경 외, 2010). 여덟째, 한반도 내에서 각종 명목으로 동원된 노동자 수는 연인원 600만 명 이상, 일본이나 전쟁지역으로 동원된 노동자 수는 139만 이상, 군인 · 군속 36만 이상에 이른 것으로 추산. 이 가운데 일본으로 동원된 노동자는 최소 70만을 넘고, ‘일본군 성노예(중군위안부)’도 적어도 1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정태현, 2010).

종합해볼 때, 1939년부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6년여 동안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연인원 600-7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당시 조선인구가 2,000여만 명을 감안하면 온 민족의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제동원은 몇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모집 · 관 알선 · 징용 · 근로보국대 형식의 노동력 강제동원, 지원병 · 학도병 · 징병 등 병력동원, 군속 · 군

부(軍夫) · 일본군 ‘위안부’ 등 군 관련 동원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동원된 지역도 조선 내는 물론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 남방 등 일본권 전역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본토를 비롯해 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시베리아 등 국외로 동원된 노무인력이 15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450만 명 안팎은 각종 보국대, 봉사대, 근로단 등의 이름으로 한반도 내 작업장에 끌려간 국내동원 피해자들로 추정된다. 국내동원의 경우 1인당 두세 차례씩 여러 번 차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인원이 아닌 실인원수는 2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의 동원과 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적게는 10-20여만 명, 많게는 50여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호경 외, 2010: 44; 정구태·김어진, 2018: 251).

## 2. 강제동원의 대표적인 기업

조선인의 강제동원의 양대 축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젊은이들의 군대소집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기업들로서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중일 전쟁 이후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주체가 되어 조선인을 집단적으로 동원하였다.

2006년 8월 일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일본의 강제동원 전범기업 및 한국의 청구권자금 수혜기업 등 한일청구권협정책임 1차 10개 기업’ 기자회견을 하면서 10개의 일본 전범기업명단을 발표한 바 있는바,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쇼와전공, 일본강관주식회사, 동경마사, 미쓰이, 다이해이 머티어리얼, 스미토모금속공업, 오카모토 등이 그 명단에 올랐다(김호경 외, 2010: 44).

한편, 2012년 8월 29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일본 기업 1천493개를 조사한 결과 299개가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

### 3. 강제동원 관련 주요 소송 현황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본격적인 소송 제기는 1990년대부터이다(김창록, 2019). 2019년 7월까지 전 세계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대일과거청산소송은 총 98건인데 그 중 한반도 출신자(재일한인, 중국적 조선족 포함)가 제기한 소송이 53건에 이른다. 일본의 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소송이었다. 미국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9월 18일에 한국·중국·대만·필리핀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미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게다가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에서, 미국의 법원은 정치적인 문제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원고 패소를 내린 것이다(김창록, 2019). 결국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곳은 한국 법원이었다. 마침내 2000년 5월 1일에 (주)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이 시작이었고, 두 번째로 2005년 2월 28일에 (주)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소송에서 획기적으로 2018년 10월 30일에 일본제철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이 피해자 승소판결로 선고되었고, 뒤이어 11월 29일에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피해자 승소판결로 선거되었다. 2019년 7월 현재까지 15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어 원고의 수는 총 900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III.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sup>4)</sup>

---

4) 이하 독립인용문은 별도의 인용표시가 없는 경우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문임.

## 1. 본 사건 소송 진행 과정

1997년 피해자 2명이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구 일본제철)(주)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3년에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sup>5)</sup> 2005년에 서울지방법원에 피해자 5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 일본제철(주)과 현 신일철주금(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3. 선고 2005가합16473),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7.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이에 2009년 8월에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2012년 5월에 일본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구 일본제철과 현 신일철주금의 동일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멸시효 주장도 권리남용을 밝히며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이에 2013년 7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그러나 2013년 9월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주)에서 대법원에 재상고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5년이 흐른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판결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 2. 재판에서의 쟁점 사항

본 사건에서 쟁점사항은 총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에서의 패소 확정 판결이 우리나라의 재판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둘째, 구 일본제철의 채무가 신일철주금에도 승계되었는지 여부이다. 셋째, 신일철주금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여부이다. 넷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

5) 大阪地方裁判所 平成9年(ワ)第13134号等; 大阪高等裁判所 平成13年(ネ)第1859号;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平成15年(オ)第340号 참조



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이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일본패소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sup>6)</sup> 동일한 사건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피해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sup>7)</sup>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2) 구 일본제철의 채무가 신일철주금에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원고 피해자들을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일본제철이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8)</sup>

---

6)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에서는 일본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일본제철(주)과 신일철주금(주)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7) 범정지의 절차법인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3) 신일철주금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여부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정구태, 2018: 256)고 하였다.<sup>9)</sup>

### 4)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sup>10)</sup>

이에 관해서는 대법관의 다수의견과 별개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다수의견(대법관 7인)은,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본 결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

---

8)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는 종래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법인격부인 법리보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된 법리로서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영업양도, 현물출자, 회사분할 등을 통해 신설될 수 많은 한국 회사들까지 구 회사 채무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있다(천경훈, 201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9.7.16. 선고 2008나49129 판결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0) 이 부분의 주된 텍스트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문임을 밝히는 바이며,

상청구권은 아래의 사항을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 사정,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당사국들이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다는 사정도 있어서, 식민지 지배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또한 식민지 지배 문제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11)</sup>

---

11) 대법원에서 제시한 근거 중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다음의 근거이다. 즉,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 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sup>12)</sup>

둘째, 대법관 이기택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별개 의견을 제시하였다.

---

12) 대법원은 위의 증거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61. 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 6,400만 달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기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로 당시 일본 측의 반발로 제5차 한일회담 협상은 타결되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협상 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일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환송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은 ‘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실령 포함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한일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고, 환송 후 원심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이러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 의견이다.

한일청구권협정 및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갑 등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결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갑 등이 일본 국민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IV. 우리의 대응 방안

### 1. 대법원판결의 엄중한 집행

대법원판결은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을 적용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을 해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동 협약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및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sup>13)</sup>

대법원은 위의 법리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들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2019년 3월 26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압류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

13) 위 본문의 31조와 32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다.<sup>14)</sup>

2019년 1월 9일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불러 대한민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압류 승인에 대해 항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였다(김회경, 2019). 2019년 5월 19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김명진, 2019),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임경우, 2019).<sup>15)</sup>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속해서 다른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상태이기도 하다.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승소판결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 2.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일제의 강제동원에 있어서 핵심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한

- 
- 14) 압류자산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PNR)’(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이다. 1차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를 압류하였다. 2차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로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를 압류하였다.
- 15)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계약국의 정부가 타방계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계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김창록, 2019)는 의견이 타당하다.

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독일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독일의 교훈

### (1) 진정한 사과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독일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이후 계속해서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기념행사에서 총리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나 아돌프 히틀러를 우호하는 발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 나치 휘장, 하켄크로이츠를 공중에 내비치는 것조차 철저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체코를 침략한 날,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일인 9월 1일, 종전날인 5월 4일에 독일 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일인 9월 1일에는 전쟁으로 인해 학살된 무고한 타국 국민들에게 묵념하는 의식도 행하고 있다.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가 독일의 진정한 과거사 사과와 배상에 감사하는 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다.<sup>17)</sup>

### (2)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설치와 운영

---

16) 반나치법안(영어: Anti-Nazi Laws, 독일어: Strafgesetzbuch section 86a)은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독일 형법 제 86조, 제 86a조(독일어: Strafgesetzbuch section 86a),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관례에 근거하여 법적 정당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는 특히 나치와 관련된 단체를 의미하고, "상징"은 이러한 단체의 깃발, 휘장, 뱃지, 유니폼, 구호, 경례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17)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19년 8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정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수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점을 알려왔다"며 "이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람들(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그것(추가 지원금)을 받을 만하다"며 "독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덕식, 2019).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비롯하여 이웃나라에서 840만 명을 강제 동원하였고, 이들은 주로 독일 군수공장과 민간업체에 배치되어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독일도 외국인 피해자들의 끈질긴 피해배상 요구로 마침내 2000년 8월 의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을 설치하게 되었다.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이 재단에 무려 6500여 개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각 26억 유로씩 출연하여 모두 52억 유로<sup>18)</sup>의 성금을 확보하였다.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 기업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과는 무관한 기업도 많았다고 하니 범독일인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기업들은 나중에 배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해방되는 조건으로 재단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재단 운영은 각국에서 선발된 27명의 이사가 담당 하였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66만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마무리되었는데, 개인 손해배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에게는 최고 7670유로까지 지급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피해를 본 국가별로 별도 기구가 만들어져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폴란드-독일 화해재단’과같이 피해 국가별로 각각 설치되었고, 이 배상금의 수혜자는 100개국에 이르렀다. 그 중 폴란드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여 48만여 명에 9억7900만 유로,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 47만여 명에 8억6700만 유로, 러시아 23만여 명에 3억8000만 유로 순이었다.

## 2)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2+2, 2+1, 1+1, 1+1/a 등의 방안들이 주장되고 있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18) 2020년 3월 1일 현재 원화 가치로 6조 9천억 원에 이른다.

한다.

(1) 2+2안

이 방안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안이다. 본래 2010년 양국 법조계(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협회)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전범 기업과 정부 4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이다.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이 전향적으로 '종자돈'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가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본 전범기업과 정부가 동참해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다(연합뉴스, 2011). 2010년 11월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야당의원 16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7년 6월 이혜훈 의원 등 10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박의래, 2019). 또 2019년 8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의 야당 중의원들과 함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2+2안을 골자로 하는 공동 법안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강성규, 2019).

(2) 2+1안

이 안은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2019년 8월 자유한국당이 공로명 전 외무장관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일본통'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안한 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안이 "한일청구권 협정(1965년)과 대법원 배상 판결(2018년)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김준영, 2019).

(3) 1+1안

1+1안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자는 안이다. 2019년 6월 19일 한국 정부가 아베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

했으나 거부당하였다.

(4) 1+1+a안

이 안은 일본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a) 협상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들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과 한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2019년 12월 18일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의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 무소속의 서청원·김경진 의원 등이다 (뉴스1, 2019).

이 법안에 따르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 안들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다.<sup>19)</sup>

3) 우리 대응의 방향

독일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독일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용

---

19)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68.6%, 전문가가 64.2%가 찬성하였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밝힌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이관순, 2019).

서를 구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2차 세계대전 희생자 기념행사에서 총리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사과분위기를 타고 2000년 8월 여야 만장일치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이 설치되고 강제동원 피해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빌리브란트 총리는 반(反) 나치스 운동가이고, 사회주의 운동가였다. 그리고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설치도 2002년 집권한 사민·녹색당 연합정권이 앞장을 서서 보수 정당과 협의해 마련된 것이다. 반면 현재 일본의 정치는 극우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성 있는 배상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정치풍토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3억 달러이다.<sup>20)</sup>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이라고 밝히고 있고, 무상으로 제공된 3억 달러는 유상으로 제공된 2억 달러와 함께 경제협력의 성격에서 제공된 것이지 강제동원에 따른 대가로 제공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당시 우리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위 자금을 가지고 세 가지의 관련 법률까지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sup>21)22)</sup> 그동안 제안된 대응방안들

20) 이 3억 달러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현재 원화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2조 8천억 원에 이른다(<https://www.usinflationcalculator.com/>을 통해 환산해보았다).

을 보면 대부분 그 해결 주체로서 한국정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에는 한국 정부가 포함된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고른다면 가장 최근에 제안된 1+1+α 안으로 여겨진다.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안으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익성향의 일본 정부에게 진정한 사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의 일제 피해국들과 연대하면서 또 일본 내의 양식(良識) 있는 정치인, 법조인, 단체들과도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시켜 나갔을 때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으로 본다.

## V. 결론

지금까지 강제동원의 전반적인 현황, 대법원판결 중에서 10월 30일자

- 
- 21)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수입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이어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0개월간 국민의 대일청구권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09,54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위 신고분에 대한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사이에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87,69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하였다”(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기본적 사실 관계).
- 22)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총연합회 소속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 후 소수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을 한 적이 있다...이는 청구권 자금이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한 징표이다...보상금 사용의 주체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혜주, 2019).

전원합의체의 대법원판결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일제가 1939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6년여 동안 조선인을 연인원 600-700만 명이나 강제 동원했고 이 강제동원에 앞장섰던 일본 기업이 1천여 개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시 실제로 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2018년 10월 30일과 동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이후 계속해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의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한 결과, 이 청구권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식민지배하고, 일본 기업이 반인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료를 요구한 점, 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점,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협력자금이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일본이 강하게 항의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승소판결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현재 일본과의 합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안인 1+1+a 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안으로 여겨진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세 가지의 관련 법률까지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정부의 책임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안이 양국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일본의 정치는 극우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강제동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의 일제 피해국들과 연대하면서, 또 일본 내의 양식(良識) 있는 정치인, 법조인, 단체들과도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주요어

강제노동,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전범 기업,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대응방응

## <참고문헌>

- 강성규(2019). 한일 野 공동 추진 '강제징용 배상' 법안 입법 검토 착수. *뉴스1*(8월 9일). 웹: <https://www.news1.kr/articles/?3691805>에서 2월 4일 검색함.
- 김덕식(2019). 독일의 진정한 과거사 사과·배상에 감사. *MK*(8월 16일). 웹: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8/635321>에서 2020년 1월 26일 검색함.
- 김명진(2019).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Chosun.com*(1월 19일). 웹: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1686.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1686.html)에서 2020년 1월 18일 검색함.
- 김준영(2019). “靑 일본 대책없다”던 야권, 자체 대응방안은 실효성 있을까. *중앙일보*(8월 11일). 웹: <https://news.joins.com/article/23549109>에서 2020년 1월 14일 검색함.
- 김창록(2019). 한-일 '강대강' 대결의 진원...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오마이뉴스*(8월 2일). 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57783에서 2020년 1월 17일 검색함.

김혜주(2019).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총연합회 “정부가 직접 보상하라”. *KBSNEWS*(7월 23일). 웹: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8095>에서 2020년 2월 5일 검색함.

김호경·권기석·우성규(2010).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돌베개.

김희경(2019). 日, 신일본제철 압류 통지 확인 후 한국에 협의 요청. *오마이뉴스*(1월 9일). 웹: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91667060134>에서 2020년 1월 18일 검색함.

뉴스1(2019). 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a 법안 대표발의. *Donga.com*(12월 18일). 웹: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8/98865134/1>에서 2020년 1월 11일 검색함.

박경식(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1910-1945, 나라를 떠나야 했던 조선인에 대한 최초 보고서*. 박경옥 옮김. 고즈윈.

박의래(2019).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재단 설립법으로 일괄구제해야. *연합뉴스*(5월 13일). 웹: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3064400004>에서 2020년 2월 3일 검색함.

연합뉴스(2011). 한일, 강제동원 피해보상 '2+2' 해법 추진. *연합뉴스*(2월 27일). 웹: <https://www.yna.co.kr/view/AKR20110226067400043>에서 2020년 2월 3일 검색함.

연합뉴스(2012). 조선인 강제 동원한 현존 일본 전범기업 299개. *연합뉴스*(8월 29일). 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60173](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60173)에서 2020년 1월 17일 검색함.

이관순(2019).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일반 국민 압도적 찬성. *경북정치신문*(12월 17일). 웹: <http://m.gbpolitics.com/view.php?idx=214636>에서 2020년 1월 9일 검색함.

임경구(2019). 靑 “日 제안한 제3국중재위 요구 수용 불가”: 18일 답변 시한 앞두고 거부 방침 공식화…日 추가 제제할까. *프레스이안*(7월 16일). 웹: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9248?no=249248>에서 2020년 1월 28일 검색함.

정구태·김어진(2018).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법학논총* 25.3. 249-268.

정태현(2010).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역사비평사*. 웹: <https://terms.na>



ver.com/list.nhn?cid=62006&categoryId=62006&so=st4.asc에서 2020년 1월 17일 검색함.

정혜경(2013). *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선인. .

친경훈(2013).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 귀속-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4.3. 433-470.

Name	Kim, Jaehyeong
Belong	Dpt. of Law, Chosun University
E-mail	jhckim@chosun.ac.kr

Name	Kim, Jongkuk
Belong	Dpt. of Law, Chosun University
E-mail	jk.kim80109@gmail.com

투고일	2020/04/29	심사일	2020/06/07
게재확정일	2020/06/11		